##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1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홍기원·민형배·김성회

이정문 • 박정현 • 권칠승

송옥주 · 조정식 · 한정애

조승래 · 김윤덕 · 정을호

손명수 · 양부남 · 이기헌

노종면 • 전종덕 의원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

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민관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이하 "민관군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민관군협의체는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의 장은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의 도입 등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민관군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lt; 선 설&gt;</li> <li>제21조의2(민관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유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이하 "민관군협의체"라 한다)를 둔다.</li> <li>② 민관군협의체는 관할 소유대책지역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li> <li>③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의 장은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의 도입 등 소유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민관군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반영하여야 한다.</li> <li>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li> </ul>	현 행	개 정 안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군협의		제21조의2(민관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음대책지역 주 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 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이하 "민관군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군협의체는 관할 소음 대책지역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의 장은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의 도입 등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민관군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체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